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85027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 선고 2020. 6. 18.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소2205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경 C 주식회사에 D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피고의 남편인 E과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교대로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16. 5. 13. 50만 원, 2016. 5. 14. 50만 원, 2016. 6. 8. 8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5. 21. 1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을 3,500만 원(설비교체시) 내지 4,000만 원(자동차만 교체시)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기존에 E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2016. 7.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일상가사에 필요한 자금(주유비, 자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E이 사망한 후 2016. 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오산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E이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1(G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각 G의 사실확인 및 탄원서)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와 G이 E의 장례식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 피고를 찾아가 대여금 1,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는 그 변제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트럭이 팔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나, 7 원고가 E이 사망한 후 피고를 찾아가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ㄴ 피고가 당시 E이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6, 제1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조서영, 판사 신유리

1) 원고는 피고가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한 돈은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발언을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설령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두고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